

## ● 협회소식

### '97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에 따른 실태조사표 발송

“제3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 조사표가 8월 20일 발송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는 제3회 조사로 1. 2회 조사시와는 달리 이용형태별(분야별 목적, 유형별 용도등)로 기계의 제작년도, 수입년도, 사용기간, 유지보수, 제품의 수입국(원산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이번 조사표를 받으시면 그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신 후 1998년 9월 15일(월)까지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1021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기획조사부(우편 번호 150-610)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전송 가능 : (02)785-397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기획관리팀(T. 566-1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소지자 현황 조사서 발송

협회는 면허자 전문인력 관리측면에서 국내 방사성동위원소등 관련 면허소지자의 실태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면허소지자 현황파악에 필요한 조사표(3pag참조)를 8월 18일 RI등의 사용업체등에 보냈습니다. 이번의 조사를 통하여 면허자를 RI이용분야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므로서 방사선안전관리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회원여러 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혹시 귀기관의 면허자와 연계하여 주변에 면허소지자로서 타업종에 계신분을 아실 경우 협회에서 개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인의 연락처를 협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업진행상황과 공지사항은 본지를 통해 계속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정보관리팀, 전화.02-566-1092)

### 교육훈련지침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자력법 제10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5조의 규정에 의거 원자력관계시설의 설계·생산·건설·보수 및 검사분야등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방사선구역내 종사하는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침”(고시 제96-14호)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자와 판매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한정되어 있어 원자력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자력관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담당 : 최도영(E-메일 : dychoi@mostws.most.go.kr)]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RI(방사성동위원소)등 관련 면허자 실태조사표

성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호출기		휴대폰			
최종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졸업(예정)년도	학위	논문제목	
RI 관련 면허관계 <sup>*1</sup>	종류	감독자	특수	일반	취업구분 <sup>*2</sup>	1. RI등 사용기관
		< >	< >	< >		2. 일반사업체 3. 자영업
	면허증번호			4. 미취업 5. 기타		
발급일				3, 5의 경우 구체적 업종기재		
근무처	직장명					
	부서			직위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일 <sup>*3</sup> (본인)						
경력 <sup>*4</sup>	기간	근무처	직위	기간	근무처	직위
포상 관계 <sup>*5</sup>	년월일	종류	시행기관	가입 단체 <sup>*6</sup>	가입기간	단체명

\* 1 : 면허종류는 해당란에 표 하시고,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함께 기재하십시오.

\* 2 : 해당번호에 표 하시고 구체적 업종도 기재하십시오.

\* 3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을 경우만 기재하십시오.

\* 4 : 근무했던 직장 관련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5 : RI관련분야 및 기타분야 포상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6 : 협회, 학회 등 단체 가입사항 기재하십시오.

※ 기재란 부족시 뒷면 등 여백 이용

작성일자 1998년 월 일

작성자



## “방사선량등을 정하는 기준” 개정 고시

과학기술부는 ICRP 신권고를 반영한 “방사선량등을 정하는 기준”을 '98. 8.11자로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배경〉

'90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방호에 관한 새로운 개념 및 기준(ICRP 60)을 설정하여 각국에 그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수행한 신권고의 제도화를 위한 내용분석, 도입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방사선량등을 정하는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선량한도의 하향조정 및 내부피폭선량 적용(제4조~제7조)
  - 종사자 및 일반인의 선량한도에 대하여 ICRP 60 권고 반영
    - 다만, 첫 5년간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선량한도를 현행의 80% 수준 (신권고치 2배)으로 적용하도록 함
  - 선량한도는 외부 및 내부피폭선량을 합한 선량에 대해 적용
  - 동위원소의 일시적 사용의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 적용
    -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당 0.1mSv 및 시간당 7.5 $\mu$ Sv
2.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규제면제범위 세분화 및 확대(제11조~제12조)
  - 규제면제 수량
    - 기존 동위원소 군별(4개)에서 핵종별(268개)로 설정
  - 규제면제 대상제품의 확대
    - 게이지 및 지시계, 안전지시등, 항공기용 발광물질, 전기 및 가스기기, 감손우라늄, 천연토륨, 연기감지기, 미량의 방사능을 내장한 장치 및 기기, 토륨함유 제품(진공관, 전등, 용접봉, 가스등용 심지, 렌즈 등)
    - 밀봉된 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 수량을 규제면제치의 100만배로 규정
3. 방사선방호에 있어서 개입시 선량제한치 설정 (제15조)
  - 긴급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를 기존 0.1Sv에서 0.5Sv로 확대
4.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 수정 (제2조)
  - IAEA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방사성물질의 핵종 농도와 열발생률로 규정
5. 기타 RI 시설기준 및 방사성물질 방출농도 등 (제16조~제21조)
  - RI 설비기준 및 폐기시설을 요하지 않는 동위원소 수량을 규제면제치 기준으로 적용
  - 사업소내 폐기기준(기체/액체), 제한구역외부의 방사성물질 농도 및 다수시설의 제한구역 외부에서의 선량제한치 등을 설정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백민사무관

E-mail: baekmin@mostws.most.go.kr